

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[별표 2]

산불경보별 조치기준(제19조제2항 관련)

산불경보 단계	소속 공무원·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	그 밖의 조치기준
관 심	○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근무요원 전부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에 감시인력 배치
주 의	○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근무요원 전부	○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진 화대 고정 배치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지정
경 계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 ○ 소속 사회복지요원의 3분의 1 이상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에 감시인력 증원 배치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○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피우기 허가 중지
심 각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 ○ 소속 사회복지요원의 2분의 1 이상	○ 민간·사회단체 및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요청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○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요청 ○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

비고

1. 산림청장은 산불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
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.
2.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
원의 대기 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
으로 조정할 수 있다.
3.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규모는 기관별 산림 여건 및
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.
4.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비상대기는 사무실 대기 또는 재택 대기 방식으로 할
수 있으며, 사무실 대기 인원 및 대기 시간, 재택 대기 인원은 산불 위험도 등
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.
5. 경계 및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의 경우, 공무원의 담당 지역 순찰·단속은 주
의 단계에서 담당 지역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실시한다.